

한국의 범죄예방 법규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 CPTED를 중심으로 -

장 동 훈*

[국문 요약]

우리나라의 주거형태나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거침입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범죄예방기법의 필요성 역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주거공간과 이를 둘러싼 주변 환경의 물리적 설계에 초점을 맞추는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가 주목받고 있다. CPTED는 범죄가 일어나는 주변 환경(공간)이 어떻게 범행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범죄 두려움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환경설계)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CPTED 관련 법규 역시 주로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CPTED 관련 법규는 그 지역의 특성에 좀 더 적합하도록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전국의 경찰관서에서 자율방범대 등 주민과 경찰관이 예방 순찰 활동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2세대 CPTED 요소도 있지만, 현행 법규나 경찰청 지침 등에 이러한 활동 단체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최근 신설되었다. CPTED 관련 조례의 증가와 함께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지치경찰이 주도하는 CPTED 활동 및 관련 기관과 경찰과의 협력 절차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CCTV 설치 등의 물리적 환경 개선으로 인한 감시와 접근통제보다 공동체 활동 강화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지역 주민과 CPTED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주민치안공동체' 조직의 구성과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근거 법규의 제정이 필요하다.

주제어: 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범죄예방, 공동체치안, 셉테드

* 대구시경찰청 경찰관(Police Officer, Police Agency in Daegu), E-mail: life95i@police.go.kr

목 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과 원리
- III. CPTED 관련 법규
- IV. 개선 방안
- V. 결론

I. 서 론

최근 우리나라 1인 가구 현황을 보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1인 가구 또한 지난 5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¹⁾. 한편 2017년 11,836건이었던 주거침입 범죄는 2018년 13,520건, 2019년 17,012건, 2020년 18,210건, 2021년 18,440건으로 지난 5년간 약 64.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여성 피해 주거침입 범죄도 크게 증가했다²⁾. 이와 같이 주거침입 범죄의 지속적인 증가는 1인 가구, 특히 여성 1인 가구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주거형태나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거침입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범죄예방기법의 필요성 역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주거공간과 이를 둘러싼 주변 환경의 물리적 설계에 초점을 맞추는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가 주목받고 있다. CPTED는 범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범행공간, 즉 물리적 공간에 초점을 맞추는 범죄예방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CPTED 관련 법규 역시 주로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고, 주거지와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계속 증가하자 2014년 5월 ‘건축법’을 개정하여 CPTED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전국의 경찰관서에서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등 다양한 명칭으로 주민과 경찰관이 예방 순찰 활동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2세대 CPTED 요소도 있지만, 현행 법규나 경찰청 지침 등에 이러한 활동 단체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³⁾이 최근 신설되었고, 우리나라는 2022년 5월 기준으로 전국의 광역지

1) 출처: KOSIS (통계청, 인구총조사), <https://kosis.kr/index/index.do>

2) 경찰청의 ‘경찰범죄통계’ 및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의 통계자료 참조.

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자율방범대법, 2022. 4. 26. 제정 2023. 4. 27. 시행.).

자체와 기초자치체 243곳에서 CPTED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CPTED 개념은 1·2·3세대 CPTED로 구분할 수 있으나 2세대 CPTED와 3세대 CPTED⁴⁾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학자에 따라 그 정의가 다를 수도 있어 이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CPTED 관련 법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 CPTED 정책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규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원리

1. 이론적 배경

CPTED는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건축과 주변 환경에 대한 설계가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보다 더 효과적이고, 사람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며, 범죄자에게는 범행 기회를 제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적절하게 도시 환경을 설계·개선함으로써 인간 행동의 통제가 가능하다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고전주의 범죄학이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범죄자의 처벌에 초점을 맞춘다면, CPTED는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실증주의 범죄학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환경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다면, CPTED는 범죄자보다 범죄가 발생하는 공간과 범죄와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춘다고 할 수 있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론은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⁵⁾)의 저서 ‘위대한 미국 도시들의 삶과 죽음(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이콥스는 범죄예방에서 지역에 대한 인식(Territorial Identity)과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Crowe, 2000).

제이콥스의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에 영향을 받은 레이 제프리(C. Ray Jeffery⁶⁾)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라는 책을 발간했고, 그의 책 제목이 현재 CPTED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박현호, 2022). 그는 도시디자인이 지역주민들의 길거리의 눈(Eyes on the Street)이 되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용도로 토지가 이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1971년 ‘방어공간(Defensible Space: Crime Prevention Through Urban Design)’이라는 책의 저자인 오스카 뉴먼(Oscar Newman⁷⁾)은 규

4) 제3세대 CPTED는 제2세대 CPTED의 개념에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의 핵심요소를 고려한 그린 정책과 이를 구현하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추가하는 개념으로 확장된다(박미량 외2, 2021).

5)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 1916-2006).

6) 레이 제프리(C. Ray Jeffery:1921-2007)는 저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서 CPTED의 구체적인 이론을 제공하였다.

모가 큰 공공임대주택이 거주민들의 구역성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키고 공공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떨어뜨리게 되어 그 지역 거주민들이 낯선 사람을 구별하기 어렵고 접근이 용이하여 범죄자들의 도주가 용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방어적 공간의 개념이 뉴먼의 저서(방어공간)에서 제시되었고 현재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이론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범죄와 범행 장소 또는 공간의 연관 관계를 중심으로 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관련된 이론 및 학문적 연구는 다양하다. 기존의 1세대 CPTED 중심의 기법은 물론이고 점차 발전하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설계를 통한 CPTED 기법이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2. CPTED의 원리

CPTED의 원리에 대해 국내외 자료를 토대로 정리해보면,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접근통제(Access Control), 영역성 강화(Territoriality)와 유지관리(Maintenance and Management)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연적 감시란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이나 시설물을 설계하고 배치할 때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여 통행인이나 일반인들에게 잘 보이도록 함으로 공공장소에서 자연적인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건물 주변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전방 시야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 접근통제란 범죄의 대상이 되는 장소 또는 물건에 범죄인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공동주택에 출입 시 출입문에 비밀번호 입력을 하도록 하는 등 출입 통제장치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신축 고급 주택에서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전문 경비 인력을 고용하는 등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거침입 범죄 발생빈도가 오래된 허름한 주택이나 경제적 빈곤 주거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방법시설 등의 설치 지원과 관련된 근거 규정이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셋째, 영역성 강화란 어떤 영역(지역)에 대해 담장이나 조정, 펜스 등 경계를 만들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그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또는 그 구역을 점유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그 영역에 대한 소속감을 주고 영역 내에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이다. 넷째, 유지관리란 공공장소나 공공 시설물을 처음 상태대로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정상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 심리를 차단하는 기법이다. ‘깨어진 창문 이론’(Broken Window Theory⁸⁾)과도 같은 맥락이다.

7) 오스카 뉴먼(Oscar Newman, 1935-2004)은 그의 저서 ‘방어공간’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주택설계와 범죄와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8)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했다간 나중엔 지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James Q. Wilson)과 조지 켈링(George L. Kelling)이 1982년 3월에 월간 아틀란틱[1]에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

III. CPTED 관련 법규

1. CPTED 도입과 발전

CPTED는 범죄 발생 이전에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 다. 이러한 정책이나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CPTED 관련 근거 법령의 제정이 우선되어야 하나, 우리나라는 현재 CPTED 관련 단일화된 기본법이 없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05년에 ‘수도권 신도시 범죄예방설계지침’을 마련하였고, 2009년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이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10년에는 초고층 건축물에 테러예방설계를 의무화하였고, 신도시 개발과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에 CPTED 기준을 도입하였다. 2013년에는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공원조성 시 CPTED의 적용을 의무화하였고, 도시개발사업 시 CPTED 계획수립을 의무화하였다. 2014년에는 건축법을 개정하여 건축법 제53조의2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와 동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경찰청에서는 2005년 이후 CPTED의 입법화를 위해 국가 CPTED 사업의 법적 기초가 되는 모법으로서의 단일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CPTED의 성격이 국토의 이용 및 개발, 계획, 교통, 시설관리, 건설 등 대부분이 당시 국토해양부 소관 업무이고 경찰이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경찰청이 관련 정부부처인 국토해양부에 협조를 구하여 CPTED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국토해양부에 CPTED 제도화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하며, CPTED 적용 의무화를 위해 관련 법령(6개)에 ‘범죄예방’ 규정의 삽입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국토해양부는 그 중에 3개(국토기본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대해 수용 의견이었고, 나머지 3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건축법)에 대해서는 중장기 검토 의견으로 회신하였다. 국토해양부가 경찰청의 요청을 수용하여 실제로 개정된 사례는 2011 7.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15조(도시기본계획의 내용) 제5호 방재·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이 있다(박현호, 2022: 189-190).

2. CPTED 법령 현황 및 문제점

(Broken Windows)’이라는 글에 처음으로 소개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이다. (출처: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우리나라의 CPTED 관련 법령은 연구논문과 단행본 등을 참고하였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센터에서 법령 검색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현행 CPTED 법령의 현황을 정리하였다.

<표 1> 국내 CPTED 관련 현행 법령

법령	조항 및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p>제19조(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제1항 도시·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p> <p>제8의3호 방재·방법 등 안전에 관한 사항</p>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p>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항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제5호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p>
	<p>제130조(정비구역의 범죄 등의 예방)</p> <p>제1항 시장·군수 등은 제5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항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한 경우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제1호 순찰 강화</p> <p>제2호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제3호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3항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한 경우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관할 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화재예방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p>	<p>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한다.</p> <p>제13의2호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 대책</p>
	<p>제30조의3(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 예방)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비촉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의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제1호 순찰 강화</p> <p>제2호 순찰 초소의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제3호 그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국토기본법 시행령</p>	<p>제5조(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항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제3의2호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p>
<p>건축법</p>	<p>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p> <p>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제2항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p>
	<p>제63조의6(건축물의 범죄예방)</p> <p>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p>

<p>건축법 시행령</p>	<p>제1호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제2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제3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제4호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제5호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제6호 노유자시설 제7호 수련시설 제8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9호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p>
<p>도시개발법 시행규칙</p>	<p>제9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영 제8조제1항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호 범죄예방계획</p>
<p>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p>	<p>제24조(보행자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길에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우범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외진 곳 등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보행자길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 시설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4항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안전조치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p>
<p>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p>	<p>제1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관리)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0조(도시공원의 안전기준)</p> <p>②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을 계획·조성·관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공원의 내·외부에서 이용자의 시야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할 것 2. 도시공원 이용자들을 출입구·이동로 등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 또는 통제하는 시설 등을 배치할 것 3.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이 다양한 시간대에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배치할 것 4. 도시공원이 공적인 장소임을 도시공원 이용자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시설 등을 적절히 배치할 것 5. 도시공원의 설치·운영 시 안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디자인과 자재를 선정·사용할 것
---	---

국토교통부 소관의 건축 및 도시정비 관련 법령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조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2015년 4월 1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94호)」를 제정하여 건축물의 범죄 예방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같은 고시 제10조(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기준)에서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출입구를 자연적 감시가 쉬운 곳에 설치하고 출입구와 그 주변에 조명을 연속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위하여 투시형으로 하고 세대 창문과 현관은 별도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제11조(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관한 사항)에서는 건축물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위하여 가급적 도로 또는 통행로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고, 부득이 도로나 통행로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에 반사경, 거울 등의 대체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건축물의 외벽은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요소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 외벽에 수직 배관이나 냉난방 설비 등을 할 경우 배관 등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같은 고시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특히 세대 창문에 방범시설을 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피난에 용이한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화재 발생 시에 개폐가 쉽지 않은 튼튼한 방범용 창문을 설치함으로써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두었다고 판단되며, 일부 광역자치체 조례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다. 방범용 창문 등 방범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2조(문화 및 집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에 대한 기준)에서는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고려하고 사각지

대가 형성되지 않게 계획하도록 하고, 출입문, 창문 및 셔터는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확보, 활동의 활성화의 CPTED 기본원리를 잘 적용하여 건축하도록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침입범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위 CPTED 관련 법령 외에 범죄예방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의9(안전정보의 구축·활용)’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각종 사고에 관한 통계, 지리정보 및 안전정책과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사고 피해에 관한 통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및 정책 수립 시에 필요하고 참고하여야 할 근거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CPTED 관련된 건축 및 도시정비 관련 법령 등 대부분이 범죄예방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CCTV나 가로등 설치 같은 환경 개선만으로는 범죄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범죄 수범이나 행태도 다양하게 바뀌며, 이에 따라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도 변화해야 될 것이다. CPTED 관련 법규 역시 여러 차례 개정되어왔다. 예를 들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5호 방재·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은 타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2, 제30조9)과 중복되어 삭제되었고, 그 후 다시 동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¹⁰⁾, 제130조¹¹⁾로 개정되었다. 이렇게 일부 관련 법률이 삭제되거나 개정되었으나 그 법률의 내용면에서 개정 전 법률과 비교해볼 때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94호)」와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기타 제9999호)」에서는 CPTED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은 2022년 8월 12일 폐지되었다. 담당 부서인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에 질의(정보공개청구)¹²⁾한 바, 기존 고시와 내용이 중복되어 폐지한다

-
- 9)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의2: 시장 군수는 제2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시행 인가 후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동법 제30조: 사업시행자는 제4조 제5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4호 제5항: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 1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 1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0조 제2항 제1호: 순찰 강화, 동향 제2호: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동향 제3호: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한 경우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관할 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화재예방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0.>
 - 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953호(2022.7.18.):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15. 4. 1. 이미 시행함에 따라 규정의 유사성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폐지함.

는 답변으로 국토교통부 내에서조차 범죄예방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의 고시가 있음에도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폐지하였다. 즉, 현재 CPTED 관련 기본법의 부재로 인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CPTED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일부 내용을 삭제 또는 개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초래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향후 CPTED 관련 법령의 제·개정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CPTED 전문가들과 협의하여야 하는 이유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보행자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길에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우범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외진 곳 등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보행자길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단서 조항이 ‘15. 7. 20. 법 개정 시 추가됨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의 측면에서 하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발전이라 생각된다. 건축주는 관할 감독관청으로부터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고서 공사 착수를 할 수 있으며, 공사를 완료한 후에 감독관청의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 규정¹³⁾에 따르면, 건축허가 때가 아닌 사용승인 단계에서 CPTED 기준을 적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CPTED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영국, 미국 등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주거용 건축물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물에 대해 CPTED 기법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축 및 재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CPTED 기법이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건축법」에서 CPTED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단계에서 설계도서의 검토를 통한 확인 및 평가가 필요하다(곽대훈·최용성, 2020).

3. CPTED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라 한다)와 19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라 한다)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했는데, 2015년도에 가장 많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¹⁴⁾. 광역지자체 중에 6개 지자체(경기, 광주, 부산, 울산, 전북, 충남) 조례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제정되었고, 11개 지자체(서울, 경남, 인천, 대구, 전북, 전남, 충북, 대전, 강원도, 제주, 세종)의 조례는 2015년부터 2017년도 사이에 제정되었다. 2014년에 개정된 법률인 ‘건축법 53조의 2항’과 2015년에 고시된 ‘범죄예방건축기준’

13)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참조.

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비교적 빠르게 추진해온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관련된 조례를 살펴보면, 범죄 발생을 사전에 막고 주민의 범죄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지자체에서도 CPTED 기법을 적용한 정책을 시행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관련된 조례는 그 구성이나 내용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다소 있어 보인다.

광역지자체에서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등 관련 정책 실행과 동시에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활용하고 있고, 각 조례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주요 내용은 목적, 정의, 기본원칙, 책무, 계획수립 및 시행,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적용범위, 추진사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포상 등이다(조성제, 2020: 190). 그리고 조례 제1조 「목적」 과 제2조 「정의」 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환경’에 대해서는 ‘건축’, ‘건축물’ 또는 ‘도시 공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지자체 조례는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1세대 CPTED)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범죄예방 관련 조례 제·개정시 각 지역별로 발생하는 범죄의 유형과 지역적 특성 등 다양한 범죄 환경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IV. 개선 방안

1. 범죄예방 기본법의 제정

현재 우리나라에는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즉 CPTED에 대한 기본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범죄예방 관련 법령이 각기 다른 정부 부처에서 발의하여 법안이 중복으로 제정되기도 하고 폐지되거나 조항이 개정되기도 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CPTED를 활용한 안전한 지역 만들기 현황과 과제¹⁵⁾’에 따르면, 도시설계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된 지자체별 조례 외에 CPTED 관련 단일 규정은 예전부터 없었다. 범죄발생 현황과 관련하여 지자체는 대부분 기존 통계자료에만 의존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범죄발생 고위험 지역에 대한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이는 경찰과의 협력의 필요성으로 볼 수도 있으나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CPTED 관련 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범죄예방에 필수적인 내용에 대한 CPTED 근거 법률이 제정된다면, 현재 지자체별 재정 여건 때문에 필요한 범죄예방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고, 광역지자체의 조례에서 근거 법률에 어긋나는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통제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셍테드법’ 또는 ‘환경설계와 범죄

15)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2015-05-02, 하혜영, 권용훈].

예방에 관한 법률' 등의 명칭으로 CPTED 관련 기본 원칙인 단일법 또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CPTED 관련 법규나 조례 제정 시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나 상호 중복되는 법을 제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CPTED 관련하여 기본적인 모범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수립 지침이 마련된다면, 지자체별로 각자 수립하고 있는 관련 조례 계획 예산을 절감하고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중앙정부는 CPTED 법 정책 관련하여 큰 테두리의 입법을 하고, 지방정부는 이러한 큰 테두리 안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범죄예방 사업은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16)'의 '제안 이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소득층 거주지역이 소외되는 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차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CPTED 기본법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에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2. 경찰과의 협력 강화

우리나라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범죄예방진단팀(CPO)을 대상으로, 경찰이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한 CPTED 정책과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에 요청한 사항을 지자체에서 얼마나 반영하였는가를 살펴보면, 2016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총 297건 중 환경시설 개선사업으로 진행된 것은 56건(18.9%)이나 241건(81.1%)은 경찰의 의견이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심명섭, 2017: 49). 이러한 조사 결과로 볼 때, CPTED 관련 법규나 조례에서 지자체와 경찰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례의 문제점에서 언급하였듯이 광역지자체 중에 12개 지자체에서만 CPTED 사업 추진 시 경찰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고, 대전시, 충청남도, 전라북도의 통합조례와 경기도, 울산시 조례에는 경찰과의 협력 의무 조항이 없다. 또한 경찰의 참여를 의무로 하는 규정을 포함한 조례에도 경찰과의 협력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각 시도경찰청에서 제정한 '범죄예방진단규칙'의 내용을 참조하여 범죄예방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경찰의 참여와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여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범죄예방 관련하여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자체의 범죄 예방 관련 시책에 대하여 경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영국의 사례처럼 건축물 신축 시 CPTED 경찰관의 역할을 우리나라에 당장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해외의 법제도를 참조하여 지자체와 자치경찰이 함께 실효성 있는 근거 규정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경찰청 소관 업무가 각 시도경찰청 소관으로 되었고, 각 시도경

16) 2020. 7. 30. 윤재옥의원 대표 발의함(의안번호 제2102511호).

찰청에서 ‘범죄예방진단규칙’을 제정하였다. 범죄예방진단에 관한 규정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를 함에 있어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정이고, 지자체와 경찰의 협업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지자체의 장은 지역주민으로부터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 등에 대한 범죄예방 실태조사나 범죄예방진단 요청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지자체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주민치안공동체 활동 강화

우리나라의 공동체의식 관련 인식 조사 결과¹⁷⁾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7명 정도(68.4%)는 우리나라의 공동체의식 수준을 낮게 인식하고 있고, 공동체 참여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53.5%에 이른다. 국민 10명 중 7명 정도(67.3%)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 돕고자 하는 자원 봉사나 기부 활동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 공동체 회복 방안으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경쟁이 아닌 협력 교육 실시(44.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출처: 현대경제연구원). 이러한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체 내에서 소속감을 느끼며 함께 살아간다는 자세인 공동체 의식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동안 우리나라 CPTED 관련 법규나 정책은 물리적 환경, 1세대 CPTED의 측면에서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 대한 개선에 치중하였으나 물리적 환경 외에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CCTV 설치 등의 물리적 환경개선으로 인한 감시와 접근통제보다 공동체 활동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고, 외국의 CPTED 교육 과정에도 다양한 형태의 주민치안공동체 활동 강화를 위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셉테드협회(ICA)에서도 “범죄기회와 범죄동기 사이의 구분은 CPTED를 1세대와 2세대로 나누는 것이다. 1세대 CPTED가 원래 사회적 응집력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훌륭한 실무자들은 그것이 운영되는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¹⁸⁾” 라며 주민공동체 활동이 1세대 CPTED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여개명, 2021).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지역 주민과 CPTED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주민치안공동체’ 조직의 구성과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근거 법령·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 규정을 바탕으로 한 주민치안공동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17) 한국경제연구의 연구보고서: 2014. 7. 31. ‘한국 사회자본 나를 넘어 공동체로’의 내용을 요약함.

18) This distinction between crime opportunity and crime motive is where CPTED divides into First and Second Generation. Although First Generation CPTED did not originally provide specific strategies to build social cohesion, well-seasoned practitioners will recognise that the physical environment cannot be divorced from the social environment in which it operates. (출처: <https://www.cpted.net/Primer-in-CPTED>).

CPTED 교육이나 셉테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도 뒤따라야한다고 판단된다. 서울시경찰청을 비롯한 각 시도경찰청에는 주민치안공동체의 하나인 ‘자율방범대’가 있으나, 별도의 허가 절차가 없고 설치나 운영에 관한 근거 법규도 없어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주민치안공동체 활동, 즉 2세대 CPTED 활성화를 위해 근거 법규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또한 국가가 치안문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에도 지역 주민, 치안 전문가들과 함께 공청회를 거쳐서 지역 사회의 특성을 반영¹⁹⁾해야 하고, 주민참여단 등 주민참여권을 보장하는 법규를 제정하여 CPTED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즉, 치안 정책에도 지역사회가 중심이 될 것이고 지역사회에 적합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관련법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CPTED에 대한 지역 공동체 주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는 범죄예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강화와도 상호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범죄예방은 지역공동체사회에서 구성원인 지역주민과 경찰,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범죄예방 대책을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4. 범죄예방 관련 지원 강화 및 다양화

범죄예방 관련 지원 강화에 대해서는 범죄예방 시설 등 설치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이러한 재정적 지원 대상 선정 시에 범죄취약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물론 이 외에도 범죄예방 관련하여 정부나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이를 위한 근거 법률이나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의 조례에서도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항이 광역지자체 중 4곳만 있고 나머지 13개 광역지자체에는 근거 조항이 없다. 근거 조항이 있는 지자체 조례에서도 ‘지자체장은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원 내용이나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미흡하다. 서울시의 경우, 여성 1인 가구와 점포에 불안감 해소와 범죄예방을 위해 이중잠금장치, 비상벨 등 안심장치를 지원하는 ‘여성 1인 가구 안심지원사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반지하방이나 낙후된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범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같은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필요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물론 범죄에 취약한 주거환경 거주자 중에서도 경제적 빈곤 계층을 선정하여 우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근거 규정을 법률로 제정하여 각 지자체에서 근거 법률에 따라 세부 내용에 대한 ‘방범 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방범시설 설치 등 지원’ 관련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

19) 2020년 12월 3일 행정안전위원회 의안번호 6259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의 제안이유 중에서는 자치경찰제가 경찰권의 분권화를 비롯한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고 공평하게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빈부의 격차로 인한 범죄 피해자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부 지자체 조례에서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을 두기도 하였으나 좀 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의 침입범죄나 강·절도 발생 빈도 뿐 아니라 신체적으로나 경제적 취약 가구, 독거노인 거주 비율 등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우선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방법시설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일부 광역지자체 조례도 그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만 맡기기보다 중앙정부에서 통일된 근거법이나 지침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는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조례를 제·개정 시에 방법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경우에 재난이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실내에서 외부로 탈출에 대한 점도 고려하여 적합한 방법시설 설치 시에 한정하여 지원해야 한다. 범죄 이외의 화재 등 기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범죄예방 관련 지원의 내용에는 각종 범죄예방 정책 및 범죄예방 사업에 대해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범죄예방 관련 교육과 범죄예방 전문가 양성을 위한 근거 규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그 지역 특성에 적합한 CPTED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적용하려면, 그 지역의 범죄 발생에 대한 특성을 알고 범죄예방 환경설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체계적 CPTED 교육 또한 중요하다. 지자체 조례에서 CPTED 관련한 교육에 대해서는 의무조항으로 하여 CPTED 업무 담당자에게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CPTED의 목적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면, 그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본다. 환경의 범위를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범죄 두려움을 줄이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미래에는 CPTED의 개념에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방식의 CPTED 활용방안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범죄예방 지원 강화의 측면에서 제3세대 CPTED와 관련한 4차 산업의 중심인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무인순찰로봇, 스마트 순찰차, 드론²⁰⁾ 등의 활용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경찰청에서 ‘국제치안산업대전²¹⁾’을 개최하고 있고, 실종자 수색에는 이미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범죄예방을 위한 물리적인 환경개선과 경찰·주민의 합동 순찰 등의 범죄예방 활동을 드론을 활용한 감시와 순찰로 전환하는 등의 인공지능 기술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20) 드론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를 뜻한다. ‘드론’은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뜻하는 단어로 벌이 날아다니며 웅웅대는 소리에 착안에 붙여진 이름이다. 드론은 애초 군사용으로 탄생했지만, 이제는 고공영상·사진 촬영과 배달, 기상정보 수집, 농약 살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출처: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X89>).

21) <https://police-expo.com/>.

V. 결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CPTED 관련 법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유사한 주제를 다룬 선행 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범죄예방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행 법규적 요소를 고려하여 이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자체에서는 각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CPTED 관련 법제도·정책으로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범죄는 범죄예방을 하지 못한 결과물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범죄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원인 제공자 또는 범죄예방 실패에 대한 대책보다는 범인 검거를 위한 수사에만 관심을 두었다. 물론 범죄 수사와 범인 검거 역시 중요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정책의 책임이 있고, 범죄예방이 국가의 본질적인 의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물리적인 환경뿐 아니라 사회 환경적인 문제인 지역사회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지역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고 이로 인해 치안 정책 또한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 중심으로 더욱 다양화될 것이기에 이번 연구를 계기로 CPTED 발전을 위한 더 많은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 강용길. 2009, “CPTED 지역협의체 운영모형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9(2): 125-159.
- 곽대훈·최용성. 2020, “CPTED의 범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 영국, 호주에 대한 비교법
제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셉테드학회지, 11(2): 125-154.
- 김강일. 2020, “침입범죄 예방 인증시설에 의한 타겟하드닝 CPTED가 범죄와 두려움 등에 미
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경기.
- 김상운. 2012, “국내 CPTED 연구 비교분석. 한국경찰학회보”, 14(6): 71-95.
- 대한범죄학회. 2022, 범죄학개론. 서울: 박영사.
- 박현호. 2019, “경찰 범죄예방진단팀(CPO)의 CPTED 관련 직무분석”, 한국치안행정논집, 제
16권 제1호: 143~172.
- =====. 2022,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제3판. 서울: 박영사.
- 심명섭. 2017, “지역사회 CPTED 정책의 발전방향 연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업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제19권 5호: 38-63.
- 여개명. 2021, “한국 지역사회의 범죄율에 관한 연구-시민참여가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을 중
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윤우석. 2021, 공간과 범죄예방. 경기: 도서출판 그린.
- 이도선. 2020, “지방자치단체의 CPTED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7
권 제4호: 179~198.
- 이석봉, 2015, “한국에서 CPTED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
구.
- 이창민. 2021, “노후 주거지 재생을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조명기법 적용”. 박사학
위논문, 충남대학교, 대전.
- 장동훈. 2023, “한국의 CPTED 관련 법령·조례 현황과 발전방안”,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구.
- 장응혁·안성훈. 2020, 일본의 형사정책 I. 서울: 박영사.
- 조성제. 2020, “지방자치단체 주민 안전보장을 위한 조례의 정비 및 셉테드 사업의 실효성 검
증”, 법학연구, 28(2): 173-199.

2. 국외 문헌

- Ashby, M., 2016, *Using Crime Science for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Theft of Metal from the British Railway Network*. Ph.D. thesis, University College London.
- Clarke, Ronald., 1992, *In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Successful case studies* edited by Ronald Clarke, NY: Harrow and Heston.
- Cohen, L. & Felson M., 1993, *Routine Activity and Rational Choice. Advances in criminological theory*, NJ: Transaction.
- Cozens, P.M., Saville, G. and Hillier, D., 2005,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 A Review and Modern Bibliography". *Journal of Property Management*. vol 23, Issue 5, 328-356.
- Crowe, T., 2000,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Applications of Architectural Design and Space Management Concepts*, 2nd ed, UK: Butterworth-Heinemann.
- Jeffery, Ray C., 1977,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A: Sage Publications.

3. 전자문서

경찰청. 2022, 경찰청 범죄,

https://stat.kosis.kr/statHtml_host/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_N70&dbUser=NSI_IN_132

국가통계포털(KOSIS). 2022,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3104&vw_cd=MT_ZTITLE&list_id=132_13204_GKIT659_dike256&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Plans of Crime Prevention Laws in Korea - Focusing on the CPTED -

Jang, Dong-Hun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ssess existing laws and ordinances in Korea, focusing on police cooperation, crime prevention support, and community security activities. It proposes effective improvement plans to enhance legal frameworks. Traditional crime prevention highlighted punishment and deterrence. However, attention has shifted to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 focusing on proactive crime prevention by enhancing the environment. In pursuit of these improvements, several crucial steps are necessary. Firstly, it is vital to establish a dedicated foundational law tailored specifically to CPTED, delineating basic guidelines for crime prevention-related ordinances and regulations. Secondl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must enact explicit laws mandating police involvement in crime prevention policies and projects across all regions, as police participation in CPTED projects is mandatory in only twelve metropolitan municipalities. Thirdly, while traditional CPTED-related laws prioritized strengthening physical environments and crime-prone areas according to first-generation principles, the significance of community engagement now surpassed mere surveillance and access control, credited to advancements like surveillance cameras. Lastly, in the implementation of crime prevention facilitie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must expand support targets, prioritizing comprehensive financial assistance for crime-vulnerable households and addressing multifaced issues through the enactment of fundamental laws or ordinances. This study holds significant implications, providing a foundation for suggesting diverse strategies in CPTED development thereby fortifying crime

prevention strategies.

Key Words: CPTED, Crime Prevention, Crime Prevention Policy, Fear of Crime

접수일 (2023년 12월 7일), 심사일 (2023년 12월 22일), 게재확정일 (2023년 12월 23일)

